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환경분야 법정계획 미수립

기 관 명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보령시, 서산시, 계룡시, 청양군

내 용

1. 환경분야 법정계획 미수립(충청남도 ○○○○○○국 ○○○○○○과)

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미수립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소관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중기계획의 해당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 ○○○○○○과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소관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같은 법령 시행일인 2012. 7. 22.부터 정부합동감사시까지 5년간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지 않고,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나. 습지보전실천계획 미수립

「습지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계획을 토대로 습지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습지조사에 관한 사항,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습지보전을 위하여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충청남도 ○○○○○○과는 관할구역의 습지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같은 법령 시행일인 2005. 3. 31.부터 정부합동감사시까지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다.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미수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수립되거나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 ○○○○○과는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도록 환경부에서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통보하면서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수립 시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문서로 요청(○○○○○과-○○, 2016.1.7.)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6. 1. 7. 문서요청일로부터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을 수립(2011~2015년 세부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환경부로 통보하지 않았다.

[표1] 환경분야 법정계획 미수립 현황

부서명	계 획 명	관련 법령	수립주기	수립여부
○○○○○ ○○과	환경보전중기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	1년	미수립
	습지보전실천계획	습지보전법 제5조	5년	"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5년	"

2. 환경분야 법정계획 미수립(충청남도 ○○○○○○국 ○○○○과)

가. 시·도빛공해방지계획 미수립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공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 ○○○○과는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같은 법령 시행일인 2013. 2. 2.부터 정부합동감사시까지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고, 매년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나. 소음·진동관리 시행계획 미수립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

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난해의 추진 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 ○○○○과는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소음·진동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6년, 2017년 소음·진동관리 시행계획을 정부합동 감사 시까지 수립·시행(2015년 이전 시행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2년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미수립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 ○○○○과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3년부터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5년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2012년 이전 시행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환경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았다.

라. 건설폐기물 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미수립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재활용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 ○○○○과는 건설폐기물 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3년부터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5년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2012년 이전 시행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표2] 환경분야 법정계획 미수립 현황

부서명	계 획 명	관련 법령	수립주기	수립여부
환경 보전과	시·도빛공해방지계획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 지법 제5조	5년	미수립
	소음·진동관리 시행계획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의3	1년	“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1년	“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의 연차별 시행계획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1년	“

3.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미수립(공주시, 부여군)

「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누수량(漏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군·구에 대하여는 그 시·군·구가 시행하려는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가. 공주시(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미수립)

공주시 ○○과는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8년~2012년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3년부터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나. 부여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미수립)

부여군 ○○○○사업소는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0년~2014년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5년부터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표3] 환경분야 법정계획 미수립 현황

시·군	계 획 명	관련 법령	수립주기	수립여부
공주시, 부여군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도법 제6조	5년	미수립

4.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미수립(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계룡시, 청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 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가. 공주시(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미수립)

공주시 ○○○○과는 관할 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6년~2015년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한 이후, 2016년부터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나. 보령시(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미수립)

보령시 ○○○○과는 관할 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같은 법령 시행일인 2007. 9. 28.부터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다. 서산시(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미수립)

서산시 ○○○○과는 관할 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4년~2013년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한 이후, 2014년부터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라. 계룡시(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미수립)

계룡시 ○○○○과는 관할 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5년~2014년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한 이후, 2015년부터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마. 청양군(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미수립)

청양군 ○○○○과는 관할 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5년~2014년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한 이후, 2015년부터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표4] 환경분야 법정계획 미수립 현황

시·군	계 획 명	관련 법령	수립주기	수립여부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계룡시, 청양군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10년	미수립

5. 자원순환 집행계획 미수립(청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와 협의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및 추진목표,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재활용산업 현황 등 자원순환 여건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자원순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관별 추진사항에 관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전년도 자원순환 추진 실적 및 분석, 소관 분야별 또는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등 재활용 여건 등이 포함된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해당 연도의 자원순환 세부추진계획, 전년도 자원순환 추진 실적 및 분석, 관할 구역의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양군 ○○○○과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해당 연도의 자원

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5년 이전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였으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의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표5] 환경분야 법정계획 미수립 현황

시·군	계 획 명	관련 법령	수립주기	수립여부
청양군	자원순환 집행계획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1년	미수립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는

[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중기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전년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진동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전년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린 후 시행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시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장, 부여군수는

[시정] 「수도법」에 따라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장, 보령시장, 서산시장, 계룡시장, 청양군수는

[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수는

[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시행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